

	<h2 style="margin: 0;">현장실습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4-12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3.07.01		
	개정번호	Ver.8 총페이지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장실습의 시행과 학점취득, 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의하여 현장실습이 본연의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현장실습 신청) ① 현장실습의 신청기간은 매학기 현장실습 신청기간에 전산상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신청방법은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이 현장실습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제3조(현장실습 이수기간 및 시기 등) ① 현장실습 기간은 2주 이상(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은 학교와 현장실습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산업체에서 실시한다.

③ 1학년 하계 방학기간부터 졸업학기 직전 방학기간 중 본인이 1개 학기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2학년(또는 3학년) 1학기 학점 이수자로서 현장 실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학부(과)에서 이수한 실험실습을 기초로 하여 전문기술 중심으로 종합적인 실습을 실시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⑤ 각 학부(과)에서는 교과 과정상 전공이론과 실습에 관련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사전에 현장실습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실습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실습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① 학부(과)별로 관련 현장실습 협조 의뢰 문서를 발송하여 협의의 기반을 구축한다.

②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승낙업체 및 그 외 관련업체를 방문, 협의하는 등 학생들이 모두 현장실습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대상업체 개척에 노력한다.

③ 산업체의 선정 기준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된 산업체중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등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 및 시설·설비와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④ 담당교수가 현장실습 대상업체 선정 협의차 관련업체 방문시 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의 의의, 산업체의 권한, 실습생 도착신고 요령 및 제반 현장실습 지도절차 등을 알리고 협의한다.

⑤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대상업체 선정 시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실습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습생을 지도감독, 평가할 현장실습담당자를 지정해 두도록 협조를 구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배정 및 사전 교육) ① 담당교수는 산업체별로 업체의 특성, 대상 학생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실습생들에게 공지시킨다.

②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습 대상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산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현장실습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중 현장실습 인정신청을 하고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학부(과)에서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및 예절교육
2. 현장실습의 목적 및 도착신고 요령
3. 현장실습의 내용 이해와 이행 요령
4.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중지 사유.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현장실습 지도) ①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확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생의 출결 상황.
2. 실습 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기록 상황 및 실습진도
4. 실습생을 지도감독, 평가할 산업체 담당자의 지정 여부 및 지도 상태
5. 현장여건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등

② 담당교수가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산업체 방문시 함께 수행한 사항은 산업체방문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

제7조(현장실습 중지) 현장실습 기간중 제 5조 제 ④항 제 5호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현장실습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
2.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 불복종하는 행위
3. 동료 실습생 또는 현장 근로자를 불순한 의도로 선동하는 행위
4. 현장실습 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

- 5. 현장실습 기간 중 알게 된 산업체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6. 기타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등 장비를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행위

제8조(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학점 평가는 매 실습 종료 후 평가기간내에 평가자료에 의거 담당교수가 현장실습 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평가서는 산학협력처 취업지원팀에 제출한다.

- ② 평가자료는 산업체 평가서 50%, 현장실습 순회지도 30%, 현장실습일지·기타과제물 20%로 한다.
- ③ 산업체 근무학생에 대한 평가는 현장지도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 실습지도 결과, 기타 필요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 ④ 현장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할 경우 이수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현장실습 평가 기간은 매 현장실습 종료 후 별도로 공지한다.

제9조(학점취득) ① 현장실습 학점은 전공 3학점 이내로 한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은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에, 3년제 학과는 3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 산업체의 권한) ①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자의 제청에 의하여 현장실습 중지 사유가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귀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의 장 또는 현장실습담당자는 이 사실을 본 대학에 유선 또는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담당교수는 현장실습생 귀교 조치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학부(과)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칙에 의거 당해 현장실습생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 중 귀교조치를 당한 학생은 차기에 현장실습을 재차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인정범위) 총장이 승인하는 현장실습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 1.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체로서 전공과 직무분야가 관련이 있는 산업체
- 2.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산업체로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 3. 산업체 재직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
- 4. 작품전 출품제작에 참여중인 자이거나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중인 자 중에서 현장실습 인정신청을 하고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실습 보험 가입) ① 실습생 본인의 상해 치료 및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체의 시설물 손괴에 대한 변상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1개월간 현장실습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 ② 각 학부(과)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전 필히 현장실습 시스템에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하여 현장실습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계약 등)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 및 학교와 현장실습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규칙의 개정) 본 규칙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